#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69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김재원·조 국·서왕진

김준형 • 강경숙 • 정춘생

이해민 • 박은정 • 차규근

김선민 • 한정애 • 박정현

신장식 의원(13인)

#### 제안이유

국립중앙박물관은 1909년 창경궁 내의 제실박물관에서 출발하여 광복 전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독점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여 국립박물관으로 개명되었으나 1972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만 사용하는 장소와 한국인도 사용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에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 10조).

법률 제 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대한민국 박물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대한민 국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대한 민국박물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대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중앙박물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법에 따른 국립대한민국 박물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 중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한

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립과 운영) ① 국가를	제10조(설립과 운영) ①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u>국립중앙박물관</u> 과 국립현대미	국립대한민국박물관
술관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립중앙박물관</u> 은 제4조제1	③ <u>국립대한민국박물관</u>
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4
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	
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	
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u>국립</u>
<u>국립중앙박물관</u> , 국립민속박물	대한민국박물관,
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	
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u>국립중앙박물관</u> 과 국립현대	⑦ 국립대한민국박물관
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	⑧ 국립대한민국박물관
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